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6-17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6-18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2026-19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6-20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6
2026-21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6-22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2026-23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2026-24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7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 가.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나.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거창군의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도민체전기획단을 추가함
(안 제13조제2항제3호)
- 나. 거창군의회가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출연기관과 답변자를 규정
(안 제28조의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4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02. 05. ~ 02.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도민체전기획단,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출석·답변 요청의 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문화재단의 사무처장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센터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p> <p>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p> <p>3. <u>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p> <p>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p> <p>3. <u>산업건설위원회: 도민체전기획단,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u>제28조의2(출석·답변 요청의 범위) 의 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거창문화재단의 사무처장</u> 2. <u>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센터장</u></p>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8
----------	---------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 라. 시설점검 및 점검 인력 확보(안 제5~6조)
- 마.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조·제8조·제9조·제58조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2.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3.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8조(교육 및 홍보)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조례안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시행 예정중으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연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사업 지원 예산	대상 사업	비 고
2026년	4,500천원	1개 사업	

4.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미 정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9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인적 자원 강화 및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2조)
-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58조, 제81조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24. ~ 3.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 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구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및 지원 사업의 안내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안 제7조(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기준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20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24. ~ 3.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거창군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300명에 대한 입영지원금 연 30,000,000원 비용 발생
- 나.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거창군에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연간 인원
- 나. 추계의 결과 : 연 30,000,000원

비용발생	산출내역	계	비 고
계	입영지원금 X 300명 X 1회	30,000,000원	최근 5년간 입영(소집)자 평균인원 : 300명
2023년 입영(소집)자	입영지원금 X 330명 X 1회	33,000,000원	
2024년 입영(소집)자	입영지원금 X 293명 X 1회	29,300,000원	
2025년 입영(소집)자	입영지원금 X 272명 X 1회	27,200,000원	
2026년 입영(소집)자	입영지원금 X 280명 X 1회	28,000,000원	
2027년 병역판정 검사대상자	입영지원금 X 430명 X 1회	43,000,000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 협의 완료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21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24.1.1.)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바.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사. 집행계획등의 심의자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11조, 26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1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환경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02. 25. ~ 03. 0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집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

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집행계획 등의 심의·자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시행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면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과 다회용기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 나. 관련 조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안 제6조), 집행계획 수립(안 제7조),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6)	2차연도 (2027)	3차연도 (2028)	4차연도 (2029)	5차연도 (2030)	합계
국비보조사업 (국비 50, 군비 50)	409	420	420	420	420	2,139

※ 2027년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용역 : 11백만원

3. 관련 의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폐자원 발생량 감소시켜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6년 기준)

- 1. 재활용선별 체험시설 운영 : 35백만원
 - 체험시설 운영 인건비 : 33백만원
 - 체험시설 운영비(재료비 등) : 2백만원
- 2. 재활용 활성화 행사 참가 보상 : 2백만원
-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 372백만원
 - 거창 공유컵 “또쓰” 활성화 : 70백만원
 - 축제장 등 행사 다회용기 지원 : 100백만원
 -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 60백만원
 - 공공기관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 142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신 동 일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22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4)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02. 25. ~ 03. 0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7조(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 ▶ 관련 조문 : 안 제5조(양봉산업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향후 사업추진 필요시 예산편성

4. 작성자 : 농업축산과장 백 승 열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23
----------	---------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서덕들은 우수한 경관과 생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관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관 관리의 지속성과 농가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경관·관광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보전 및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다. 주민지원사업(안 제6조)
- 라.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농업소득과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 : 부(장기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보전해 온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성화해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덕들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서덕들 경관의 핵심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전봇대 미설치, 비닐하우스 지양, 벼농사 중심의 경작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적 경관관리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2. 서덕들의 황금 들녘을 형성하는 벼농사 기반의 전통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경관·생태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3. 서덕들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4. 서덕들 육성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며, 사업 과정 전반에 주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5. 참여 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관”이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량 공급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모습이나 경치를 말한다.
2. “서덕들”이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농업경관 보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덕들의 환경 및 농업자원 조사
2.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3. 경관 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 지원
4. 농업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
5. 서덕들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협업체 운영 지원
6. 주민 참여형 보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7.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편의·기반 시설 설치
8.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9. 그 밖에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서덕들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관 보전 대상 구역의 지정 및 경관작물의 선정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
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서덕들 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

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마련
6.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관부서의 장, 위천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농업·경관·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및 농가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육성 및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 ▶ 관련 조문 : 안 제4조, 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서덕들 보존 및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지원방안 검토 가능

4. 작성자 : 농업소득과장 최 남 미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24
----------	---------

발의일자	2026. 03. 06.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안 제2조)
- 다.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안 제3조)
- 라. 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안 제4조)
- 마. 지원대상(안 제5조)
- 바.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지역보건법」 제11조
 - 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보건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2.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3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
2.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3.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어르신 안심주치의 실비 지원
- 나. 관련 조문 :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조 호 경